

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1 - 4호

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장경민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16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1년 3월 20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9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js9695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조례안 내용 | 찬성여부 | | 의견 | 비고 |
|--------|------|----|----|----|
| | 찬성 | 반대 | | |
| | | | | |

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장경민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 : 2021. 3. .

발 의 자 : 장경민, 성복임, 이견행,
홍경호, 신금자, 이길호,
이희재, 김귀근, 이우천

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, 조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목적, 기능,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4조 ~ 제5조)
- 다. 위원장 등의 제척, 직무,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6조 ~ 제7조)
- 라. 간사, 관계기관 협조요청, 수당 등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8조 ~ 제12조)

3. 관련법령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2조

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군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

는 위촉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1.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

2.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

4.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
④ 위촉직 위원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위원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장애인단체의 장, 당연직 위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

2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.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,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한다.

제9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비밀준수 의무)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

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